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11. 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11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❍ 예비 창업자 및 중소 벤처기업의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정의 신설(안 제1조의2)

나. 기존 입주대상 범위 확대(안 제4조)

다. 시행규칙 내 운영위원회 규정을 조례로 이전(안 제6조의2~4)

라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주요 문장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❍ **본 일부개정조례안**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발표한 「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」을 반영하고, 시행규칙 내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조례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,

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**안 제1조의2(정의)**에서는 “중소기업” 및 “벤처기업”의 용어를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의한 것을 적용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함.
- **안 제4조(입주대상 등)**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려 함.
- **안 제6조제7항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~ 제6조의4(간사 및 서기)**까지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**조례안 전체**에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비문을 정비함.

❍ 검토 결과

- 지난 ’23년 1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을 협의한 바 있으며, 이 중 지자체 창업지원기관, 입주대상 확대 권고에 관한 사항이 있음.
- 우리 구(區) 조례는 창업지원기관 입주대상을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서 “창업기업”을 규정하고 있는 ‘창업 후 7년 이내’보다 짧은 ‘중소·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’로 정의하고 있는바, 본 일부개정을 통해 입주대상을 확대하여 관내의 더 많은 초기 창업기업에 기회가 부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짐.
- 다음으로 본 조례 시행규칙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조례로 이전하는 것으로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바 있기에 이를 따른 것으로 보여짐. 아울러, 시행규칙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적기에 조례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추후 관련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으로 보여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420 호

제출연월일: 2024. 10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예비 창업자 및 중소 벤처기업의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정의 신설(안 제1조의2)

나. 기존 입주대상 범위 확대(안 제4조)

다. 시행규칙 내 운영위원회 규정을 조례로 이전(안 제6조의2~4)

라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주요 문장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단서 신설

라. 입법예고(2024. 9. 12.~10. 2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3조”를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”로,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 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2. “벤처기업”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제2조 중 “이 조례 에 의하여 영등포 벤처밸리”를 “벤처밸리”로,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, “창업지원센터 (이하”를 “창업지원센터(이하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47조”를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9조”로, “제외 하고는”을 “제외하고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필요 하다고”를 “필요하다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

지원센터 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①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.

1.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·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한 예비창업자

2.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소·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제6조제1항 중 “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
제6조제3항 중 “국장이되며”를 “국장이 되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의3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심의안건 등에 대해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의4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센터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위탁 시에는 창업지원센터 실무책임자가 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"를 "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②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창업지원센터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창업 보육센터"를 "창업보육센터"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"구청장 에게"를 "구청장에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제13조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---------- --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--------- ---------- ---.
<신 설>	제1조의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 2. “벤처기업”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(이하“창업	제2조(설치) ---------- ---------- -- 벤처밸리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---------

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	--- 창업지원센터(이하 ---.
제3조(적용범위) 창업지원센터의 운영, 입주승인, 창업지원센터 입주자(이하 “입주자”라 한다)의 지원, 졸업, 퇴거 및 사후 관리에 관하여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-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9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외하고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입주대상 등) ①구청장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·벤처기업을 설립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중소·벤처기업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.	제4조(입주대상 등) ①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시킬 수 있다. 1. 입주일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·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2.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소·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②구청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업무 총괄 및 창업지원센터 지원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을 입주시킬 수 있다.	②-- 필요하다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일반 신문 등의	③--

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--------.
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---------- -----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-------.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단서 신설>	②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
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되며, 위원은 구의원 2명, 4급 이상 공무원 1명과 벤처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---------- ---------- ------ 국장이 되며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<신 설>	제6조의2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

		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	제6조의3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심의안건 등에 대해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신 설>		제6조의4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

	있다. 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센터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위탁 시에는 창업지원센터 실무책임자가 된다.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제7조(부담금) ① (생 략)	제7조(부담금) ① (현행과 같음)
② “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창업지원센터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	②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창업지원센터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③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
제8조(공동운영) ①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하	제8조(공동운영) ①---------- ----------

여 창업 보육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과 공동 운영할 수 있다.	-- 창업보육센터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운영의 위탁) ①·② (생략)	제9조(운영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③---------- ---------- ------- 구청장에게 ------- -------.